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5.

행정위원회

1. 審查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5월 4일 안주영 의원 외 15인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2005년 5월 6일

제1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안주영 의원)

가. 제안이유

- 통장의 임기가 60세 이하의 주민 중 동장의 추천과 구청장의 위촉으로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통장들이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구정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그 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음.

나. 주요골자

-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 동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두어 통장 위·해촉 시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통장으로 위촉되어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에는 해촉하도록 하고,
-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통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하고, 통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단 통장추천심의위원회가 구성 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방자치법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専門委員 김찬재)

○ 본 조례 개정안은

- 통장의 위촉에 있어 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중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통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통장들이 지역실정의 정확한 파악을 가능케 하므로써 동행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통장에 대한 연령제한을 두어 원활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개정안 제5조 제4항 제5호중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는 공무원의 경년퇴직과 맞추어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로 수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요지

- 안 제5조제4항제5호 통장으로 위촉된 자가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에 해촉도록 한 것을 상반기, 하반기 구분하여 해촉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5조제4항제5호의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를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로 수정함.

5. 審查結果 : 修正案 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7호
----------	------------

제출년월일 : 2005.5.6.
제출자 : 김영진 위원

1. 수정이유

통장으로 위촉된 자가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에 해촉토록 한 것을 상반기, 하반기 구분하여 해촉토록 수정

2. 주요내용

안 제5조제4항제5호의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를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로 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5조제4항제5호의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를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대비표

현 행	기정안	수정안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통장의 임기) 개정안과 같음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생략 ②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현행과 같음 ②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개정안과 같음 ②개정안과 같음
④생략 1.생략 2.생략 3.생략 4.생략 5.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5.통장으로 위촉된자는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 6.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개정안과 같음 1.개정안과 같음 2.개정안과 같음 3.개정안과 같음 4.개정안과 같음 5.통장으로 위촉된자는 출생일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 말일이 도래한 때 6.개정안과 같음
제5조의2(통장추천심의위원회) 동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두며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보장하며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단. 통장추천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2(통장추천심의위원회) 개정안과 같음 부칙 ①(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②(경과규정)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157
번호	

발의년월일 : 2005. 5.

발 의 자 : 안주영의원 외 15인

1. 개정이유

통장의 임기가 60세 이하의 주민중 동장의 추천과 구청장의 위촉으로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통장들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구정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그 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음.

2. 주요내용

- 가. 제4조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 나. 동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두어 통장 위.해촉시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통장으로 위촉되어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에는 해촉하도록 하고,
- 다.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통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하고, 통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단 통장추천심의위원회가 구성 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집행부협의 : 필요치 않음(근거: 청원이송건에 대한 처리결과 회시 자치행정과-4951(2005.4.2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가. 제4조(통장의 임기) "2년"을 "3년"으로 한다.
- 나.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제2항중"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다음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삽입한다.
- 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제4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
- 라.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통장추천심의위원회) 등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두며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통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하며,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단, 통장추천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